

시부	형수	매	증손	증조부	서모	외손	처숙모	친척	
시모	제	매부	증손부	증조모	서조모	외손부	처사촌	동거인	
장인	제수	시누이	고손	고조부	이질	외조부	처고모	외증손	

* 제부, 계모(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면 포함, 따로 살면 제외 (→등본으로 확인함)

*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2025-135호/2025년8월1일 기준) *매년 변경고시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중위소득40%(월)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연간소득40%	12,308,342	20,156,602	25,723,373	31,174,742	36,272,251	41,068,570	45,672,720

★ 소득확인방법 : 전년도 소득이 있는 자는 12,38증명원 등으로 확인(소득증빙이 불가하면 불인정)

- 당해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하고, 사후 관리

★ 소득산정기간 :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통상 1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

- 다만, 취득일 현재 근로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는 1년내 소득이 기준금액 미달시 2년동안의 소득
(조심 2022지0888, 20230202 참고)

[주택 취득세 종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2022.1.1. 행정안전부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종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 · 제15호 ·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 제5조(소득의 확인)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